

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2830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1. 08. 30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1년 08월 30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일부 규정의 제·개정 및 마을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'마을상생 협약'체결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-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구성원 변경 및 위촉 위원간 성별 균형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의(마을, 주민, 추진주체) 명확화(안 제2조)
- '추진주체'의 의무 사항 추가(안 제3조제3항)
 - 역량 강화 의무 추가
- 마을상생협약 규정 신설(안 제11조의2)
 - 상호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마을상생협약 체결 가능토록 규정
- '마을만들기 위원회' 구성 변경(안 제13조제3항, 제4항)
 -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(당연직 위원 축소)
 - 위원 간 성별 균형 참여 의무 명기
-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(안 제19조의2)
 - 「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」에 의거 위원회 운영
- 기타 용어 정비(안 제2조제6호 및 안 제11조)
 - '마을 계획사' → '마을 활동가'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및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